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1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삼정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< 금감원 원안 >

○ 삼정회계법인

- 지정제외점수 100점
- 시정요구

< 수정심의·의결 >

○ 삼정회계법인

- 지정제외점수 60점
- 시정요구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삼정회계법인 >

○ **임원성과급 유보금 관련 부채 회계처리 누락**

- 삼정회계법인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할 성과급 유보금에 대하여 해당 임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·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현금 지급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